

퇴직연금 규약 신구조문 대비표

2023.06

(주)데이터솔루션
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제6장 적립금의 운용	제6장 적립금의 운용	
	<p>제21조 [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운용지시]</p> <p>①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제시한 적립금 운용방법 중에서 스스로의 선택으로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고, 반기 1회 이상 이를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운용지시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사용자는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 적용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 등의 부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제24조 [사전지정운용방법의 선정]</p> <p>① 가입자는 제21조에 따른 운용방법 선정과 별도로 운용관리기관이 [별지2]에 따라 제시하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.</p> <p>② 가입자는 제1항에서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.</p>	- 제21조 신설 - 제24조 신설

제24조의 2 [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]

- ① 사용자는 가입자가 제24조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[별지2]의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.
1.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·수익 구조
 2. 법 제21조의3제2항부터 제5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에 대한 내용
 3. 위험등급, 손실가능성 및 과거수익률
 4.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
 5. 예금자 보호 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
 6.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
 7. 법 제 21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
 8.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
 9.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- ②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도록 가입자에 관한 정보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.

- 제24조의 2 신설

제24조의 3 [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의 통지]

사용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제24조에 따라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하도록 하여

- 제24조의 3 신설

야 한다.

1. 가입자가 이 제도에 가입하고 사용자가 제13조에 따른 부담금을 최초로 납입한 때
2. 가입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

제24조의 4 [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]

- ① 가입자가 제24조의3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2주가 경과한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제21조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.

- 제24조의 4 신설

제24조의 5 [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]

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이 [별지2]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,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운용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.

1.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 사유
2. 변경되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
3. 사전지정운용방법 변경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

- 제24조의 5 신설

<p>인 사실</p> <p>4.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</p> <p>5.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 가입자는 언제든지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</p>	<p>제24조의 6 [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]</p> <p>- 제24조의 6 신설</p> <p>① 사용자는 [별지2]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 취소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승인 취소 사유 2.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해지 방법·절차에 관한 사항 3.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에 관한 정보 <p>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적립금을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도록 해야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 2.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24조의 2 각호에 관한 정보
--	---

<p>제27조 [사전지정운용방법 취소]</p> <p>① 사용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(이하 “운용관리업무”라 한다)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제6조에서 선정한 운용관리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.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.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·통지 4.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5.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<p>②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.</p>	<p>- 제27조 신설</p>
--	------------------

<p>【부 칙】</p> <p>제 1 조(시행일) 이 제도는 2016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【부 칙】</p> <p>제 1 조(시행일) 이 제도는 2016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<u>제 2 조(변경 시행) 이 제도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.(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) 다만,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은 개정법령 시행일부터 적용한다.</u></p>	<p>- 표준규약 적용</p> <p>- 사전지정운용제도 (디플트 옵션) 관련 변경 시행</p>
--	---	--

